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5. 1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년 2월 21일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0년 5월 7일

라. 상정일자: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5.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장종연)

가. 제안이유

-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광장의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타임스퀘어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용신청 허가·제한 및 통지(안 제4조~제6조)
-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안 제7조~제8조)
- 사용료 징수 및 면제(안 제9조)
-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조례안은 타임스퀘어광장을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이용에 필요한 절차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광장의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사용계획의 변경, 사용자에의 취소·정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기본 사용료로 m^2 당 1시간에 10원~20원을 징수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에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와 공익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 안 제11조에서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검토결과,
 - 타임스퀘어광장은 공공용 시설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굳이 그 사용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광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구민의 소중한 재산인 타임스퀘어광장이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그 사용에 대하여 일부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평소에는 일반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197 호
----------	---------

제출연월일: 2020. 2.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 광장의 운영·관리 및 허가·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타임스퀘어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사용신청 허가·제한 및 통지(안 제4조~제6조)
- 라.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정지(안 제7조~제8조)
- 마. 사용료 징수 및 면제(안 제9조)
- 바. 이의신청 및 원상회복(안 제10조~제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0. 1. 16. ~ 2. 5./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타임스퀘어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타임스퀘어광장”이란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442-6 일원에 광장 형태로 조성된 장소를 말하며, 해당구역 지상에 설치된 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
2. “사용”이란 타임스퀘어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구민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광장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1. 사용 목적이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 사용일시가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 청소년, 여성 및 65세 이상 노인 관련 행사

③ 구청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구청장은 광장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허가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 변경)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광장사용허가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영등포구 포함)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청서 상의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대하여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지를 사용일부부터 4일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광장을 사용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따른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라 사용신청에 대한 불허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이 손상된 경우 사용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적정한 조치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광장사용료 기준(제9조 관련)

구 분	단 위	금액(원)	비 고
사용료	m^2 /시간	10원~20원	
기타	<p>1. 광장면적의 2분의 1을 넘게 사용하는 경우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p> <p>2.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p> <p>3.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06:00)는 사용료의 3할을 가산한다.</p> <p>4. 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에 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3할을, 야간은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5할을 가산한다.</p> <p>※ 행사관련 시설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한다.</p>		

[별지 제1호서식]

타임스퀘어광장 사용허가신청서(제4조 관련)				
행사 명 칭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		년 월 일(요일) 시 분 ~ 시 분 (시간 분)		
주최자 또는 주 최 단체의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FAX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연락 책임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직 업	
사 용 인 원		사용면적		m^2
행 사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영등포구청장 귀하</p>				
<p>☞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p> <p>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p> <p>3.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 시설물 설치시)</p> <p>4. 안전관리계획(참여인원 500명 이상 행사 시)</p>				